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10

발의연월일: 2022. 6. 7.

발 의 자: 김선교·강기윤·김상훈

김영식 · 김예지 · 안병길

양금희 • 윤상현 • 이종배

조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 농업·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·환경보전·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,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,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(농가인구·고령화율:('11) 3백만명,33.7%→('21) 2.2백만명,46. 8%)

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.

이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,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, 비과세예탁금·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 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71조 제1항).
- 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 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다.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 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6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, "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6년 1월 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1조(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제71조(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)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・초지・산림지 • 어선 • 어업권 • 어업용 토지 등 · 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 · 초지 · 산림지 · 어선 · 어 업권 · 어업용 토지등 ·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 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 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 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 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 이라 한다)에게 2022년 12월 3 -----2024년 12월 3 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 1일----

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시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
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<u>2024년 12월 31일</u>

100분의 9「해당금액이 20억원(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 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 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 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 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 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 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 세를 하지 아니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- 1. ~ 3. (생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저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
대한 과세특례)

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•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

<u>2024</u>
<u>년 12월 31일</u>
·
1.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
12월 31일
2. 2026년 1월 1일
세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율과세 등) ①

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 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

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
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

<u>2024년</u>
12월 31일
<u>2</u>
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
월 31일
② 2026년 1월 1일